

2017학년도 2학기 홍콩 Lingnan University 파견 교환 장학생 후보자 선발

1. 모집인원 : 1명
2. 장학금액: 30,000HKD (약 3,900USD)
3. 수학기간: 2017년 2학기(한 학기)
4. 지원자격
 - 가. 학적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2~3학년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4학년 지원 불가) .
 - 나. 성적 : 전체 평점평균(GPA) 2.5 이상
 - 다. 어학성적: TOEFL 79 또는 IELTS 6.0 이상(2015년 4월 이후 응시한 어학성적만 유효함)
 - 라. “서울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외국대학 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 자격제한
 - 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학부 재학기간 중 단과대학 협정 또는 본부 협정을 통하여 국외수학 승인을 받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이 1개 학기를 초과하는 자(계절학기 미포함)
 -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험이 있는 자 (실제 파견된 자 및 취소자 등 모두 포함)
 - 2017학년도 2학기 교환프로그램 시기 중 군 입대 예정인 자
5. 지원절차 : 아래 제출 필요 서류 준비하여 마감일 까지 담당자에게 제출
 - 가.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양식첨부)
 - 2) 영문성적표 1부(2016년 4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성적표 제출)
 - 3) 어학성적표 사본 1부
 - 4) 국문 수학계획서 1부(별도 양식 없음. 수강 희망 강좌 리스트(약 6개) 및 본인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포부,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 5) 지도교수 및 학장추천서 1부(양식 첨부)
 - 나. 서류제출 마감: **2017년 04월 25일(화) 18:00시 까지**
 - 다. 서류제출처: 국제협력본부(152동 2층) 국제교류실 아시아지역 교환학생 담당자 윤이나

(inayoon7@snu.ac.kr / 880-4357)

*국제협력본부 위치: 58동 경영대학 맞은편 CJ International Center(152동) 건물

6. 장학생 선발 및 파견

- 1) 본교 선발기준: 초청 외국대학에서 제시한 지원자격(학업성적, 어학성적 등 포함)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학업성적(평균평점) 기준**으로 선발
- 국제협력본부는 후보자를 선발하여 Lingnan University에 추천(최종 장학생 선발 여부는 Lingnan University의 권한임)

7. 등록금 관련

장학생으로 선발 될 경우 파견교환학생으로 등록되며, 파견학기 서울대 등록금을 납부하고 Lingnan University의 등록금 납부는 면제됨.

8. 학점의 취득

Lingnan University 규정에 따라 최소 12학점(4개 과목) 이상 최대 18학점(6개 과목)이하 학점 취득

9. 학점의 인정

- 국외수학 승인에 관한 사항 및 학점의 인정은 “서울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규정”에 의함
- 파견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학점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소속 단과 대학행정실로 문의

10. Lingna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대학 정보:

<http://www.ln.edu.hk/oge/download/documents/incoming-students/fastfactsheet-fall2017.pdf>

11. 제공강좌정보

- 1) Course list: <http://www.ln.edu.hk/reg/info/timetable/201709courselist.pdf>
- 2) Course descriptions and restrictions: http://www.ln.edu.hk/reg/course_descriptions4yr.php

12. 기타 문의: 국제협력본부 윤이나 담당자 (inayoon7@snu.ac.kr / 880-4357)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5.1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12.7.1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4조 (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 (수학신청) ①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3. - 4.<삭제> 2002. 1. 7

②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7조 (수학허가) 수학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학신청의 취소) ①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 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취득학점)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09. 8. 7.>

②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2조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 7>

제13조 (학점의 인정 기준) 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 7. 28>

②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 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제14조 (학점인정 절차) ①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대학(원)장은 소속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5조 (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6조 (지원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7조 (수학허가)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등록 및 수업료) ① (등록 및 수업료) ①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2.12.]

② 수업료는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납입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2.12.]

③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 (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2. 1. 7> ① - ②<삭제> 2002. 1. 7

제23조 <삭제> 2002. 1. 7

제24조 (취득학점의 처리) ①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 (수강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956호,2014.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